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 도 참 고 자 료		
담당부서	예방연구팀		배 포 일	2019년 4월 5일 / (총 8매)	
팀 장	안현아	02-6210-0109	배 포 부서	이용섭팀장	02-6210-0051
담 당 자	김진영	02-6210-0163	기획예산팀	이윤경과장	02-6210-018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주요 내용

- ◆ **의료분쟁 상담, 조정 신청 증가세 지속**
 - 전년(2017년) 대비 2018년 상담은 18.7%, 조정 신청은 20.9% 증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
- ◆ **2018년도 상급종합병원 조정 신청 사건은 100건 중 73건 개시**
 - 전체 조정개시율은 60.2%,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3.4%로 2014년(30.3%) 대비 2배 이상 증가
- ◆ **의료사고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아**
 - 감정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 감염, 진단지연, 장기손상, 신경손상 순으로 나타남.
- ◆ **최근 5년 동안 종결된 사건 100건 중 63건이 조정 성립,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
 - 최근 5년간 종결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
 -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 평균 성립금액은 1,018만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
- ☐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하여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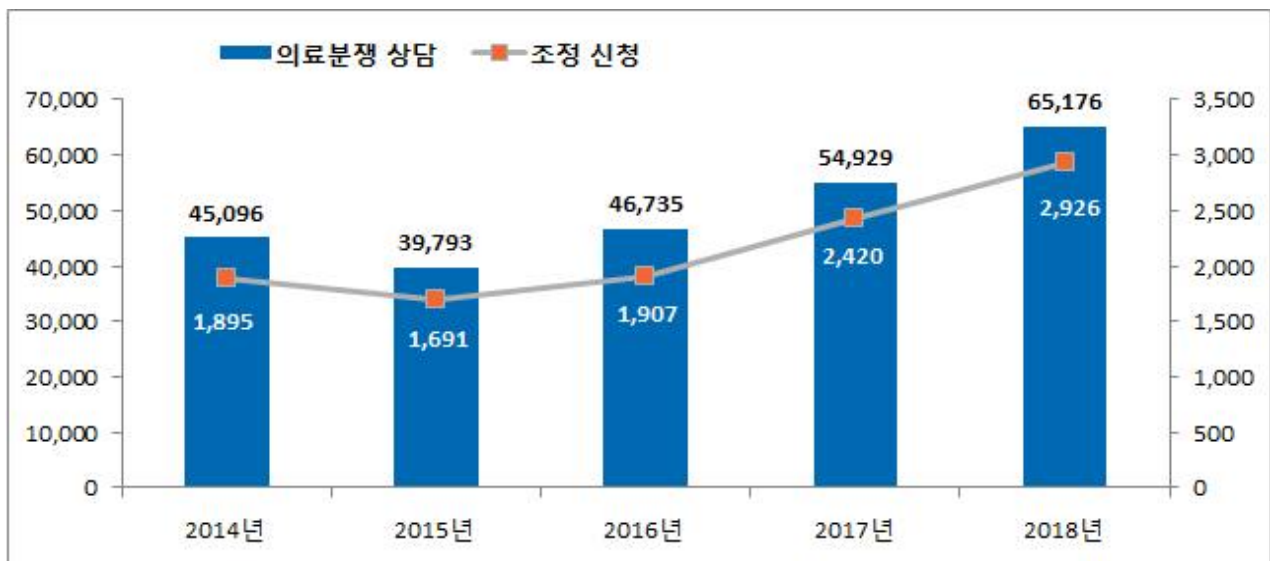
-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하였으며,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하였다. 특히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의료분쟁 상담	45,096	39,793	46,735	54,929	65,176	9.6
조정 신청	1,895	1,691	1,907	2,420	2,926	11.5

* 최근 5년간 상담누적건수(251,729건), 조정신청건수(10,83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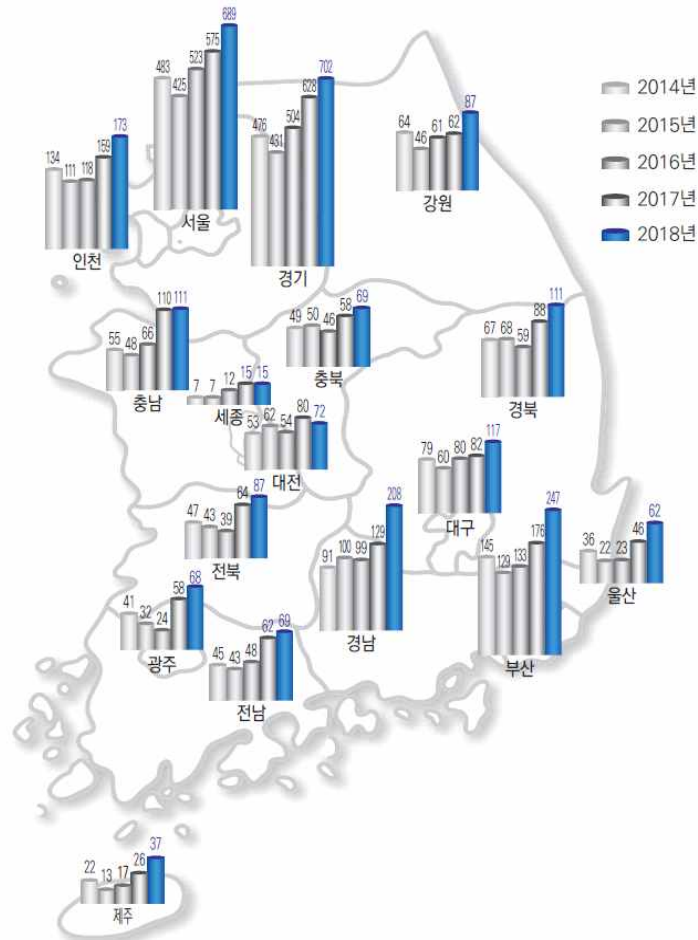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2,741건, 25.3%), 서울(2,695건, 24.9%), 인천(695건, 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6.6%)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830건, 7.7%), 경남(627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0,839 (100.0)	2,695 (24.9)	830 (7.7)	418 (3.9)	695 (6.4)	223 (2.1)	321 (3.0)	189 (1.7)	56 (0.5)	2,741 (25.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320 (3.0)	272 (2.5)	390 (3.6)	280 (2.6)	267 (2.5)	393 (3.6)	627 (5.8)	115 (1.1)	7 (0.1)

《연도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52.0%였고, 이 중 2018년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영향을 여전히 받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 역시 2017년 49.1%, 2018년 50.1%의 개시율을 보여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16. 11. 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연도별 조정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적
45.7	44.3	45.9	57.2(49.1)	60.2(50.1)	52.0

* ()는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제외한 사건의 조정개시율

- 2018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으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30.3%)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구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2014년	30.3	41.5	52.6	44.8	50.0	52.5	51.7	57.3	51.3
2015년	33.1	37.9	54.3	33.3	62.5	50.0	43.8	61.0	57.1
2016년	43.0	38.9	51.6	61.9	71.4	40.5	46.3	58.7	43.8
2017년	65.3	52.4	61.1	60.0	60.0	71.7	49.4	56.8	45.2
2018년	73.4	60.9	61.6	69.4	50.0	75.4	45.7	55.7	42.9

- 의료사고 감정의 결과 사고내용은 지난 5년간 증상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하였고,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320	(100.0)	834	757	859	1,202	1,668
1. 증상악화	1,405	(26.4)	184	166	158	305	592
2. 감염	468	(8.8)	55	57	111	115	130
3. 진단지연	465	(8.7)	67	73	63	107	155
4. 장기손상	400	(7.5)	51	51	76	115	107
5. 신경손상	378	(7.1)	58	59	78	75	108

-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1.2%), 치과는 임플란트(21.7%),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의과														약제과		
계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기타	계	조제	복약지도
4,651	672	182	171	231	6	1,102	1,917	33	117	53	9	8	150	8	7	1
(100.0)	(14.4)	(3.9)	(3.7)	(5.0)	(0.1)	(23.7)	(41.2)	(0.7)	(2.5)	(1.1)	(0.2)	(0.2)	(3.2)	(100.0)	(87.5)	(12.5)
치과									한의과							
계	교정	의치	발치	보철	임플란트	보존	치주치료	기타	계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540	47	12	94	115	117	106	29	20	120	22	64	1	4	2	12	15
(100.0)	(8.7)	(2.2)	(17.4)	(21.3)	(21.7)	(19.6)	(5.4)	(3.7)	(100.0)	(18.3)	(53.3)	(0.8)	(3.3)	(1.7)	(10.0)	(12.5)

-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18만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9,209만원으로 나타났다.

-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780건(53.9%)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으로 그중 과반수 이상인 451건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10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계	조정							중재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 결정	취하	각하	소계	화해중재	중재판정	종료 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5,162	2,780	833	451	382	746	717	73	13	5	5	3
(100.0)	(53.9)	(16.1)	(8.7)	(7.4)	(14.5)	(13.9)	(1.4)	(0.3)	(0.1)	(0.1)	(0.1)

《연도별 성립 건수 및 성립금액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립 건수	3,241	550	495	563	698	935
평균성립금액	10,179,601	8,557,202	9,233,170	10,098,201	10,187,038	11,678,468
총성립금액	32,992,087,516	4,706,461,257	4,570,418,931	5,685,287,175	7,110,552,464	10,919,367,689

-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율은 89.5%로 나타났으며, 2018년의 경우 84.0%로 전년(2017년)대비 6.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및 조정성립률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구분	누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성립률	89.5	89.7	94.1	93.8	90.5	84.0

-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법 시행('16.11.30.)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되었고 2018년에는 591건으로 2017년 대비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원인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94.6%), 의식 불명(3.1%), 장애1급(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 건)

구분	전년대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	383	6	10	33	37	47	29	45	29	42	37	46	22
2018년	54.3	591	70	43	44	46	49	45	54	40	37	51	45	67
계	-	974	76	53	77	83	96	74	99	69	79	88	91	89

* 2016년 자동개시 사건 신청 없음

** 전년대비: (해당 년도 접수 건수 - 전 년도 접수 건수) / 전 년도 접수 건수 * 100

《최근 2년간 원인별 자동개시 접수 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계	사망	의식불명	장애1급
974	921	30	23
(100.0)	(94.6)	(3.1)	(2.4)

-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의 조정성립율은 78.2%이고, 총 성립금액은 58억9,694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조정 현황》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

계	합의	조정 결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조정 성립율
		소계	성립	불성립				
753 (100.0)	270 (35.9)	184 (24.4)	85 (11.3)	99 (13.1)	160 (21.2)	122 (16.2)	17 (2.3)	78.2

《최근 2년간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성립건수 및 성립금액》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조정 성립건수	총 성립금액	평균 성립금액
355	5,896,936,853	16,611,090

-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882건으로 법원(47.4%) > 경찰(38.7%) > 검찰(13.4%) 순이며, 접수된 사건 중 처리 완료된 2,384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17.4%), 내과(17.3%), 신경외과(11.4%), 산부인과(10.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뢰기관별 수탁감정 접수 현황》

(사건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계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기타
2,882 (100.0)	1,366 (47.4)	387 (13.4)	1,115 (38.7)	2 (0.1)	12 (0.4)

《진료과목별 누적 수탁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2,384 (100.0)		412 (17.3)	160 (6.7)	416 (17.4)	271 (11.4)	153 (6.4)	52 (2.2)	240 (10.1)	97 (4.1)
안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신경과	마취통증 의학과	정신건강 의학과	영상 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재활 의학과
36 (1.5)	31 (1.3)	23 (1.0)	37 (1.6)	52 (2.2)	32 (1.3)	57 (2.4)	7 (0.3)	2 (0.1)	11 (0.5)
가정 의학과	응급 의학과	방사선종 양학과	병리과	결핵과	핵의학과	치과	한방과	약제과	기타
24 (1.0)	78 (3.3)	1 (0.0)	2 (0.1)	1 (0.0)	1 (0.0)	110 (4.6)	64 (2.7)	4 (0.2)	10 (0.4)

-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8년에 20건, 5억6,349만원을 지급하였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13.4.8.)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0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11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보상 현황》

(‘18.12.31. 기준, 단위: 건, %, 원)

구분	청구	보상	기각	각하	취하	심의중	보상금 집행액 (합계)
계	74	55	12	1	1	5	1,370,000,000
2014년	6	4	1	1	-	-	120,000,000
2015년	10	8	1	-	1	-	225,000,000
2016년	12	11	1	-	-	-	270,000,000
2017년	26	21	5	-	-	-	505,000,000
2018년	20	11	4	-	-	5	250,000,000

- 윤정석 원장은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의료중재원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의료사고 상담, 감정, 조정중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통계연보가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